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피해 원인은 '기동 침하'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도 원인으로 꼽아 민주 이원택 의원 "하자보수·피해 보상 필요"

비가 줄줄 새는 스마트팜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문제의 주요 하자 원인이 기동 침하와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발생 주요 원인은 비닐 연결 처리 부실로 인한 천정 누수와 지반 안정화 과정 중 일어난 기동 침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하자원인 파악을 위한 측량 과정에서 기동변위를 확인한 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의 경우, 수직 방향으로 최대 4cm의 침하가 일어났으며 수평방향으로는 최대 0.7도의 기울어짐이 발생했다.



스마트팜 온실 설계 상 허용범위는 수직 방향 6cm, 기울기 0.72도로 농촌진흥청의 '원예시설의 기초설계기준 및 해설(안)'과 '온실 구조설계 기준(안)'에 각각 따른 것이다.

이번 김제 스마트팜의 기동 침하는 허용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수직 방향으로 4cm 침하와 수평방향으로는 허용한계에 근접한 수준까지 변위가 발생해 영농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피해가 천정누수와 스크린 파손 등이며, 이에 더해 온실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로 누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이후

청년농업인들은 140여 곳에 대한 누수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누수 등 하자가 지속되는 동안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수로 인한 다양한 병해충 발생, 양액기 고장으로 인한 작물 생리 장애, 직접 누수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작물 폐기까지 복합동 5개 동별로 많게는 2억여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가 문제해결과 청년들의 피해보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팜을 찾는 청년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발생 시 신속처리 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기자회견하는 국회 법사위 야당 위원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진 간사와 위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

민주 이성운 의원, 법사위 국감서 서울고등법원에 촉구 "국민이 사법에 부여한 역할, 전향적이고 적극적 법 해석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1심 판결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 사고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에 따른 촉구로 해석된다.

실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용산구청장이 각각 10월 17일과 9월 30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성수대교 붕괴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좁은 법 해석으로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은 그때보다 퇴보했다"고 밝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으나, 과실범의 공중정범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아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빚졌다. 이에 법원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성수대교 시공사와 정부를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주요 책임자들에게 고의와 과실이 동시 인정되는 등 앞선 판결보다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성운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2주기 전주 추모제에서 만난 유가족의 피맺힌 호소를 전국의 법원에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성운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만호 기자

가족돌봄 13세 미만 아이들... 정부는 관리조치 안해

복지부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 아닌 돌봄 대상, 관리 안해" 민주 박희승 의원 "아동복지·권리 보호 차원에서 규모 조사해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조치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애인 실태조사 상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2023년 말 기준 12만2,435명으로, 그 중 4세~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16,320명에 달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조손가구 아동은 5만1,174명이었는데, 이 중 62.9%(3만1,969명)가 5세~14세 아동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9명이었는데, 이들의 63.8%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였다.

문제는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3세 미만이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담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세~34세 청(소)년을 당시 약 10만 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가족을 돌보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칙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족돌봄청(소)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취약계층 아동으로 보호할 뿐 가족돌봄아동

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고등학생의 약 20%가 초등학교 때부터 돌봄을 시작했다는 첫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의 아동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취약 전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는 아이들이 17.3%, 저학년(7~9세)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고 답한 아동이 30.9%에 달했다. 영국도 실태조사에 따라 5세~17세 사이 아동 2%가 가족 돌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돌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아동복지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 규모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에서의 현저 조사나 학생기초조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700만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매겨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7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횡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

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송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뉘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